



백양골 소식

2020년
11월

■ 제509호 ■

발행인:장성군수/ 편집인:총무과장/ 제작:총무과/ ☎ 390-7239/ FAX 390-7579/ jangseong.go.kr/ 2020.11.24.(화)



	못			
	다		단	여
	한		풍	행
장	성	백	양	사

(feat.노을)





[일반행정 소식] ----- 1

- 1. 전라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안내
- 2.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 3.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보건·복지 소식] ----- 4

- 1.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사항
- 3. 2020년 독감 예방접종 미접종자 접종 안내
- 4. 절주생활수칙
- 5.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7.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 유축기 무료 대여

[농·축산 소식] ----- 11

- 1. 동물 학대·방치행위 금지 및 사육 관리 철저
- 2. 잠깐! 동물등록 하셨나요?
- 3.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 4.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유관기관 소식] ----- 15

- 1. 정치후원금이 만드는 성숙한 정치문화
- 2.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국·도정 소식] ----- 17

- 1. 가을철 산불예방 (11.1.~12.15.)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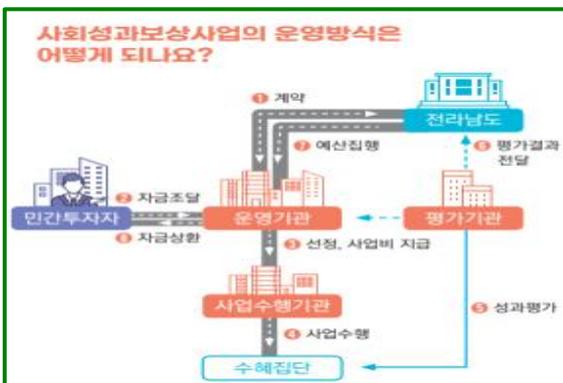


전라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안내

□ 사회성과보상사업이 무엇인가요?

- 민간 사업자가 투자자(독지가, 재단 등)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토대로 지역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사업의 성과를 자치단체에서 성과보상금으로 지급을 통해 구매하는 것

□ 운영구조 및 역할



- 1 전라남도는 운영기관과 계약 체결
- 2 운영기관은 민간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 조달
- 3 사업 종료 후 독립된 평가기관이 성과 평가
- 4 평가기관이 성과 평가결과를 도와 운영기관에 전달
- 5 도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집행
- 6 운영기관은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및 이자 상환

□ 장점 및 효과



사업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따라 자자체의 예산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사업효과의 제고가 가능하며 투자자는 사회공헌 실천과 동시에 수익 창출 가능



사회 예방적 사업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사후적으로 추가되는 사회적비용의 절감, 민관협치에 의한 사회문제 공동해결로 사회적 가치 확산

전라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분야 발굴 추진을 위한 활동에(간담회, 토론회, 협의체 구성 등)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어떤 사업이 사회성과보상사업 대상이 되나요?(예시)

- 아동복지분야 :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적능력 및 사회성 향상
- 일자리 분야 : 저소득층 근로역량 강화 통한 기초생활급여자의 탈수급
- 노인복지분야 : 경도인지장애자 현장관리 통한 치매 집단을 감소

문의처 ☎ 390-7326 (기획실 기획팀)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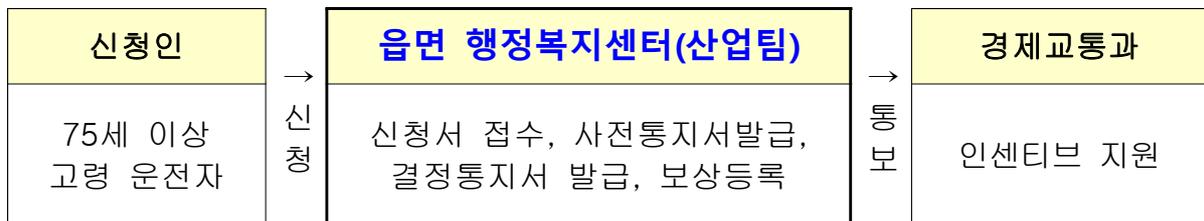
- 기 간 : 2020. 2. ~ 12.
- 대 상 : 모든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만 75세 이상
(1945. 12. 31.이전 출생자) 고령자
- 지원인원 : 15명
- 방 법 : 교통카드 또는 장성사랑상품권 1회 지급(10만원 상당)

□ 접수 및 선정 절차

- 접수기간 : 2020. 8. 3. ~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평일 09:00 ~ 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운전면허증 반납 및 인센티브 지원 접수처 :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신청(신분증, 운전면허증 지참)
-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 비치)
- 처리절차



- 운전면허 자진반납 : 읍면 행정복지센터(산업팀)
- 인센티브 지원 : 군(등기우편 발송)

- 대상자 선정 :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신청 순으로 선정

문의처 ☎ 390-7075 (경제교통과 대중교통팀)

2020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20.10.26 ~ 12.16 까지 주민등록법(§20)에 따른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대 상

- ① 사망의심자
- ② 장기간 결석 학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 ③ 시·군·구별 자체 사실조사 대상자



- 해당 기간 동안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 등이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재등록에 따른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390-7436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11월 13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위반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잘못된 마스크 착용 예시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턱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



마스크 걸면을 만지는 행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사항

(2020. 11. 7.)

구분	단계별 기준 (확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단계>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마스크착용 의무화		(수도권) 100명 미만 (타지역) 3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지역) 30명 이상	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500명 이상	전국 800~1000명 이상
중점관리시설	중점관리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고위험사업장 등	1단계 외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 실외 위험도 높은 활동	실내 전체, 2m 거리유지가 어려운 실외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 좌석 1m 거리 한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150㎡ 이상)	1단계 외 (유흥시설) 총취기 금지, (방문판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식당·카페) 50㎡ 이상 적용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 이외 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 허용	집합금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관리시설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칸 띄우기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	집합금지 (장례식장은 가족 참석만 허용)
※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격 유지						
모임·행사		500명 초과 방역수칙 의무화, 지자체 신고·협의	1단계와 동일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100명 이상 금지	50명 이상 금지	10명 이상 금지
등교(학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학교 2/3)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1명 온라인 영상만 가능 모임·식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체육시설		정상 운영 ※ 실내체육시설 4㎡당 1명 인원 제한	이용인원 50% 제한	이용인원 70% 제한	운영 중단	
실내 문화·여가시설		정상 운영	이용인원 50% 제한	이용인원 70% 제한		운영 중단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유지(물품공백 최소화 위해 방역 철지)				긴급물품만 제공

- 중점관리시설(9종)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강성주점, 클럽·틱,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1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저가점영양)
- 일반관리시설(14종) : 결혼시장, 장례시장, 학원·고급스 포럼,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영회관, 공연장, 놀이공원·워터파크,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아이돌방, 상점미트·백화점(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 ※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참조

2020년 독감 예방접종 미접종자 접종 안내

□ 독감 무료 예방접종

- 대 상 : 만62세 이상, 18세이하, 임신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장애수당자
- 접종기간 : **2020. 12. 31.(목)까지**
- 접종기관 : 보건기관 및 관내 위탁의료기관

□ 독감 유료 예방접종

- 대 상 : 만 19~61세(무료대상자 제외)
- 접종기간 : 백신소진시까지
- 접종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접종금액 : 17,000원

□ 독감 무료 예방접종 병의원 현황

구 분	의료기관명	연락처	소재지	의료기관	연락처	소재지
만 62세 이상	장성병원	390-9000	장성읍	연세연합의원	395-4300	장성읍
	장성혜원병원	399-3000		예은가정의학과의원	395-2600	
	장성공립노인 전문요양병원	395-1170		하하호호 마취통증의학과	392-0077	
	장성중앙내과의원	392-8575		황룡의원	392-7599	황룡면
	장성기독의원	393-3403		백양요양병원	930-5000	삼계면
	박상선내과의원	392-7997		중앙의원	394-7273	
	백이비인후과	393-8250		세브란스의원	393-7582	
	전대가정의원	393-8528		삼계푸른의원	394-8262	
	열린의원	394-5003		성심의원	392-1019	북이면
	한솔의원	395-2290		제일통증의학과	392-1141	
생후6개월 ~ 만18세	장성혜원병원	399-3000	장성읍	세브란스의원	393-7582	삼계면
	전대가정의원	393-8528		삼계푸른의원	394-8262	
	한솔의원	395-2290		중앙의원	394-7273	
	백이비인후과	393-8250				
수급권자	예은가정의학과의원	395-2600	장성읍	세브란스의원	393-7582	삼계면
	하하호호 마취통증의학과	392-0077		중앙의원	394-7273	
				제일통증의학과	392-1141	북이면
임신부	중앙내과의원	392-8575	장성읍	세브란스의원	393-7582	삼계면
	한솔의원	395-2290		삼계푸른의원	394-8262	
	전대가정의원	393-8528		중앙의원	394-7273	

문의처 ☎ 390-8332, 8337 (보건소 예방의약팀)

< 절주 생활 수칙 >



1 꼭 필요한 술자리가 아니면 피하기



2 선·후배나 친구에게 술 강요하지 않기



3 원샷, 하지도 말고 외치지도 않기



4 폭탄주·사발주로 섞어 마시지 않기



5 음주 후 3일은 금주하기



6 이런 사람들은 금주해야 해요

지나치게 술 취한 선·후배나 친구가 있을 때

- ① 위험증상(구토, 이상고열, 저체온, 의식불명, 호흡근란 등)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주세요
- ②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119에 도움을 청하세요

문의처 ☎ 390-8361 (보건소 건강생활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만 2세(0~24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다자녀(2인이상)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의 영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영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의 영아
-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 중)
 -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한부모 등

【2020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394,000	79,924	45,003	80,076
3인	3,096,000	104,090	95,023	105,268
4인	3,799,000	126,909	118,159	128,407
5인	4,502,000	151,927	150,605	153,994

- 지원내용 : 기저귀) 월 64,000원, 조제분유) 월 86,000원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출생신고) ~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구비서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격 보유 증명 서류 1부
 -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 1부
 - 조제분유 지원 대상 증빙 서류 1부
- 신청접수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문의처 ☎ 390-8363 (보건소 건강생활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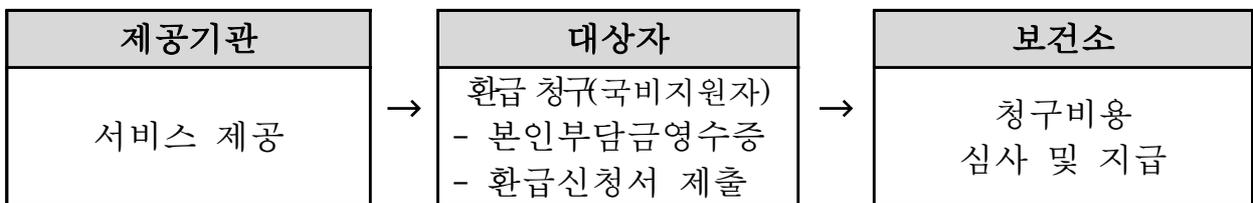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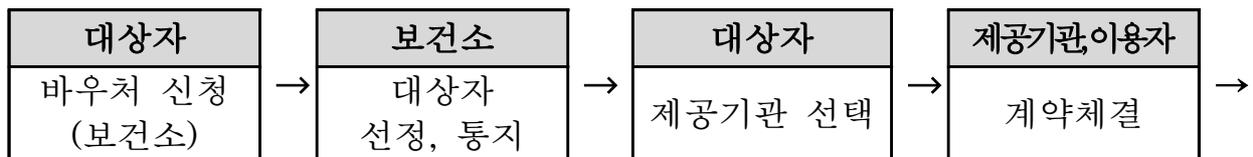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립니다.

- 대 상 : 관내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 지원 등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원범위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기준중위소득)	표준형		비 고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태아	첫째아	50%이하	870,000원	290,000원	국비지원
		120%이하	766,000원	394,000원	
		140%이하	609,000원	551,000원	
		국비지원 제외자	609,000원	551,000원	군비지원

※ 태아유형, 출산 순위, 소득 유형,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절차



※ 공공산후 조리원 이용 시 중복지원 불가

○ 접수서류

- 공통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주소 상이한 경우), 휴직증명서(휴직 기간, 유무급 표시)

문의처 ☎ 390-8363 (보건소 건강생활팀)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

- 대 상 : 보건소·보건지소 임부 등록자
- 내 용
 - 엽산제 : 임신일로부터 ~ 임신 12주까지(1인당 최대 2개월분)
 - 철분제 : 임신16주 이상 ~ 분만전까지(1인당 최대 5개월분)
 - 유산균 : 임신16주 이상(1인당 1개월분)
 - 임부 튜살 크림 : 1인당 1회 지원
- ※ 타기관 중복 지원 제외
- ‘임산부 배려’ 엠블럼 제공
- 지 참 물 : 신분증, 산모수첩
- 접수장소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및 보건지소

□ 영·유아

- 대 상 : 24개월 이상 ~ 만6세 미만 영·유아
- 내 용 : 어린이 영양제 1인당 연간 1회 지원
- 접수장소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및 보건지소

문의처 ☎ 390-8363 (보건소 건강생활팀)

임산부 유축기 무료 대여

- 대 상 : 관내 등록 임산부
- 기 간 : 4주 대여(3주 연장 가능)
- 지 참 물 : 신분증, 출생증명서
- 접수장소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문의처 ☎ 390-8363 (보건소 건강생활팀)

동물 학대 · 방치행위 금지 및 사육 관리 철저

□ 동물 학대 · 방치행위 금지 및 사육 관리 철저

-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적절한 사육 환경 제공 및 관리에 대한 보호자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 우리군 관내에서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 동물에게 해로운 잔반을 먹이거나 오염된 물을 제공하여 건강상의 위해를 일으키거나 영양실조 상태로 방치하는 형태의 부적절한 영양공급이나,
- 발이 빠지는 뜰장, 좁은 공간에서 과밀 사육 등 적절치 않은 사육 환경에서 키우는 형태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육환경 제공 및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 위의 사항을 위반 시 동물보호법 및 관련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동물 사육 · 관리에 관한 규정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 ·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지,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신속한 치료 조치 명령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처 ☎ 390-8425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

잠깐! 동물등록 하셨나요?

□ 등록대상

○ 동물등록 대상과 하는 시기는?

- 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 강아지가 2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 변경신고란?

-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10일 이내)
- 소유자 정보(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때,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았을 때, 등록 동물이 사망했을 때,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었을 때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등록방법

○ 동물등록은 어떻게?

- 우리군 등록대행기관에 접수하세요!
 - 장성동물병원 : 장성읍 영천로 83 (☎ 061-394-7753)
 - 옐로우동물병원 : 삼계면 사창로 57 (☎ 010-5415-9114)

○ 변경신고는 어떻게?

- 소유자변경은
 - 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 소유자정보 변경사항, 동물 유실·사망 등은
 - 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동물보호관리 시스템(animal.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 390-8425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통한 축산악취 저감 및 고품질 퇴비화로 지속가능한 축산발전을 위해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 시행일시 : 2020. 3. 25부터
- 대 상 : 축사면적(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모든 농가
(소 100㎡, 돼지 50㎡, 가금 200㎡ 이상)
- 시행내용
 - 퇴비부숙도 기준 및 적용농가(가축분뇨법 시행령 12조의2 별표3)

항 목	축 종	기 준	부 숙 도	비고
부숙도	모든가축	1,500㎡ 미만	부숙중기	
		1,500㎡ 이상	부숙후기·부숙완료	

- 퇴비부숙도 검사횟수 및 적용농가(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

항 목	신고규모	허가규모	비고
검사횟수	연 1회	6개월에 1회	
시설규모	•한우·젓소 100~900㎡ 미만 •양돈 50~1,000㎡ 미만 •가금 200~3,000㎡ 미만	•한우(90두)·젓소(70두) 900㎡ 이상 •양돈(1,200두) 1,000㎡ 이상 •가금 3,000㎡ 이상	

- 과태료 부과(가축분뇨법 제53조)

항 목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퇴·액비 부숙도 기준 위반	
	허가	신고	허가	신고
1차	50만원	30만원	100만원	50만원
2차	70만원	50만원	150만원	70만원
3차	100만원	70만원	200만원	100만원

문의처 ☎ 390-8421 (농업축산과 축산팀)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0. 1. 1. ~ 12. 15.
 - 신청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이메일(js714900@korea.kr) 접수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첨부
 - 신청자격
 - 장성군에 주소를 둔 자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산부
 - 단, 보건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대상자는 제외
 - 지원내용
 - 1인 480,000원 친환경 농·축산물, 유기식품 등 (자부담 : 96,000원)
 - 친환경농산물 : 애호박, 마늘, 대파, 토마토, 블루베리, 깻잎 등
 - 친환경축산물 : 유기농달걀 등
 - 친환경유기식품 : 이유식(쌀, 단호박), 유기농 김 등
 - 지원절차
 - 농협몰(www.nonghyupmall.com) 가입
 - 신청서 제출 → 확정 및 자부담 입금계좌 문자 발송
 - 자부담 96,000원 해당계좌 입금 후 농협몰 포인트로 480,000원 입금
- ※ 택배 배송은 주 1회이며, 친환경농산물 특성상 시기별 제품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농업축산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문의처 ☎ 390-8413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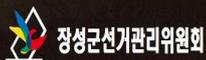
●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격려이자 사랑입니다



정성

정치후원금이 만드는
숙한 정치문화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정치후원금은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정치후원금센터 이용장점



후원회 계좌 확인 및
인적사항 전달 용이



후원내역 조회 및
영수증 간편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편 신고 신청에 동의할 경우 가능

-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국번없이 126)



세상을 가꾸는 노력,
당신의 후원금이 큰 힘이 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정치후원금센터** 를 검색하세요

정치후원금의 역할

민주주의 국가로서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 마련

일반 국민
정치참여의 기회 제공

정당 및 정치인
깨끗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KT올레TV ch.273, 티브로드 ch.205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17조



기부행위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 3 9 0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구호·자선행위 등 위반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기부행위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도 금지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요 위반사례

❏ 축·부의금품 제공

- × 경조사 또는 행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기재된 근조·축하화환 전시
- × 결혼식에서의 주례

❏ 무료상담·무상임대

- ×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의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제공
- ×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 구호·의연금품 제공

- ×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 등 금품 제공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은 가능)
-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관서에 격려금 제공

❏ 회비·헌금 제공

- × 친목회·동창회의 정관 등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별도의 기금 제공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다니는 교회(가인 다른 교회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헌금

❏ 식사·음료·교통편의 등 제공

- ×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식사 등 음식물 제공
- ×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 제공

❏ 상장·부상 수여

- × 선거구 내 단체의 내부행사서 상장과 부상 수여
- × 각급 학교의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가을철 산불예방 (11.1.~12.15.) 안내

(자료제공: 산림청 산불방지과 ☎ 042-481-4256)

산불예방을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지 않기
-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기
- 산에 들어갈 때 화기 및 인화·발화 물질을 소지하지 않기



※ 산림인접지역 :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

입산이 가능한 등산로를 이용해 주세요 !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은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정하여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음
- 산행에 앞서 관할 시·군·구청이나 국유림관리소, 산림청 홈페이지, 네이버 지도 등을 통해 입산이 가능한지 확인

실수로 산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타인 소유 산림에 방화한 자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산림보호법 제57조)



-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 : 과태료 100만원
- ▶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 : 과태료 30만원
- ▶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 과태료 10만원
- ▶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0만원
- ▶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산불조심기간동안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자 : 과태료 100만원



장성군